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이 법의 목적에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 지원을 명시하고 입주기업체의 디지털전환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1조 및 제49조).
- 자유무역지역에서의 통관 및 관세 부과에 있어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 「관세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확대함(안 제3조).
-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의 입주자격 정비, 기준건축면적률 적용의 유연화, 출입국관리 특례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고부가가치 기업의 입주를 촉진함(안 제10조, 제14조 및 제48조의2).
- 토지 또는 공장등의 취득자에 대해 입주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정해진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 해당 토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도록 함(안 제11조).
- 입주계약의 해지사유를 구체화하고, 계약 해지 시 토지 또는 공장 등에 대한 처분의무를 명확히 하여 투기적 이용을 방지함(안 제15조).
- 국유 토지 및 공장등의 매각 시 관리권자에게 매각계획 수립의무를 부과하고, 지가상승분의 일부 기부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 공유 토지 및 공장등에 대한 임대·매각 절차와 방식을 정비하고, 제3자 공급 가능성을 확대함(안 제18조).
-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한 기간 및 방식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분할·지분 양도 제한, 임대료 상한 규정, 관리권자의 비용 징수 권한 등을 신설함(안 제25조).
- 처분의무 미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불법 처분으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II. 검토의견

- 안 제11조제5항1)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개시된 날”의 의미가 모호하고²⁾, 실제 계약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³⁾,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음⁴⁾.

1) 안 제11조(입주계약) ⑤ 제1항의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은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날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세관장과의 사전 협의를 위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법무부는 법률상·계약상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개시된 날을 뜻하는지,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개시된 날을 뜻하는지 불분명하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3) 유형별 계약 체결 기간(3개월 이내) 기산점

계약 체결 원인 유형	계약 체결 기간 기산점	제5항 반영
국유지를 임대하여 사업	선정평가를 거쳐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 제15조제2항제1호의 관리기관으로부터 입주계약 안내를 받은 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개시된 날
입주기업체의 토지등을 임차하여 사업	제25조제3항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임대하는 토지등을 임차하기로 계약한 날	
입주기업체의 토지등을 사용하여 사업	제25조제3항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입주기업체와 사용자간 사용 계약을 체결한 날	

- 안 제15조제2항에서 일정 기간 내에 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유사한 내용의 현행 단서 규정을 삭제함.

현 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15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② 관리권자는 입주기 업체등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u>입주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u> 다만, 제1호 및 제3호 의 경우 관리권자가 시정을 명한 후 산업 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입주기 업체등이 이를 이행 하는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15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② ----- ----- ----- ----- <u>산업통상</u> <u>부령으로 정하는 기간</u> <u>내에 그 시정을 명하</u> <u>고 이를 이행하지 아</u> <u>니하는 경우 그 입주</u> <u>계약을</u> ----- -. ----- ----- ----- -----	제15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② ----- ----- ----- ----- <u>산업통상</u> <u>부령으로 정하는 기간</u> <u>내에 그 시정을 명하</u> <u>고 이를 이행하지 아</u> <u>니하는 경우 그 입주</u> <u>계약을</u> ----- -. <단서 삭제>

-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전문위원 박 혜 진)

4) 산업통상부는 향후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에서 사용 개시일에 대해 구체화하여 상대방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운영상 명확성 확보할 예정이라는 설명임.